

문서번호	○○실-3307		팀장	감사1부장	감사실장	감사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07.30.		협 조				
공개여부	비공개(5)						

## 2017년 사고이월 예산 타당성 실태점검 성과감사 결과 보고

**2018. 7. 30**

# 목 차

<b>I. 감사실시 개요</b> .....	<b>1</b>
1. 감사배경 .....	1
2. 감사목적 .....	1
3.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	1
4. 감사 중점사항 .....	2
5. 감사방법 및 절차 .....	2
6. 감사기간 및 인원 .....	2
<b>II. 성과감사 점검내용</b> .....	<b>3</b>
1. 사고이월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3
2. 부문별 사고이월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4
3. 예산 집행 및 반납 이행에 관한 사항 .....	5
<b>III. 성과감사 결과</b> .....	<b>6</b>
1. 총 평 .....	6
2. 지적사항 총괄 .....	7
3. 지적사항 요약 .....	7
<b>IV. 성과감사 처분요구</b> .....	<b>8</b>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8
<b>V. 기타사항</b> .....	<b>9</b>

# 2017년 예산 사고이월 타당성 실태점검 성과감사 결과보고

2018년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2017년도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타당성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I 성과감사 개요

### □ 감사 배경

이번 감사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 예산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공사 재무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성과감사를 실시하였다.

### □ 감사 목적

이번 감사는 2017년 사고이월된 예산 편성 및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공사의 예산관련 총괄부서인 ○○○○실 및 각 부서의 2017년 사고이월 예산편성 내역의 타당성 및 집행(운영)에 관한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분	점검영역	비고
사고 이월 예산 편성의 적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 관련 법률, 규정 및 정부지침 준수 여부</li> <li>○ 사고이월 예산의 편성 적정 여부</li> <li>○ 예산집행 관련 법률, 규정 정부지침 이행 여부</li> <li>○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 실적 점검</li> </ul>	

## □ 감사 중점사항

- 2018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사고이월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2018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등을 파악하여 2018년 세출 예산편성의 낭비요인 등 위험요소를 분석하며,
- 또한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집행), 여부 확인 및 집행완료 후 잔액에 대한 예산반납제도 활성화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 □ 감사방법 및 절차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및 2017년 사고이월 예산 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비 조사시 수집한 부서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이월 예산 실태 확인을 위한 부서별 예산업무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 감사기간 및 인원

- 이번 감사는 2018. 6. 25. 부터 같은 해 6. 29. 까지 5일간 3명의 감사인력 (연 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수행하였다.
- 감사인: 감사1부장 이승택, 수석팀장 송◁◁, 팀장 이▼▼

## II 성과감사 점검 내용

### 1. 사고이월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가.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 「재무규정」 제28조(예산의 편성), 및 제34조(예산의 이월)

#### 나. 점검결과

-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및 「재무규정」 제28조(예산의 편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재무상태표 및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
- 「재무규정」 제34조에서는 “◇장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예산담당부서는 2018년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고이월 명세서 세부내역에 대한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이하 “ERP”라 한다)에 등록된 예산요구서와의 대조를 통해 이월 예산이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확인한 후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 2018년 사고이월 예산 편성내역을 점검한 결과 붙임2 ‘2017년분 부서별 사고이월 예산 명세서 현황’과 같이 용역수행기간 연도이월 또는 대금지급기간 연도이월 등의 다양한 사유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예산 총 33건 중 30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부문별 사고이월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가. 관련규정

- 「재무규정」 제34조(예산의 이월)

### 나. 점검결과

- 「재무규정」 제34조(예산의 이월)에는 “◇장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공사 ○○○○실 ●●●●부(이하 “예산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하여 ‘2017년 사고이월 예산 제출’(●●●●부-7295, 2017. 11. 8.)을 통해 부서별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확정분) 세부내역 및 사업관련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 또한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월별(연간) 예산집행계획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 집행계획 등록 및 제출’(●●●●부-89, 2018. 1. 4.)문서를 시달하였다.
-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부문별 소요예산 및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반영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 ○○○○실의 2018년 예산편성 내역을 점검한 결과 ‘중요 기록물 전산화 구축 4차 용역’ 및 ‘측량장비 배터리 충전함 구입’ 등 2건에 대한 사고이월 예산 618,100천 원을 ERP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부서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사고이월 예산 집행 및 반납이행에 관한 사항

#### 가. 관련규정

- 「재무규정」 제32조(예산의 집행)

#### 나. 점검결과

- 「재무규정」 제32조제1항에서는 “◇장·◆◆◆장·□□□장·△△본부장은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되, 계속비는 ◇장이 그 지출한도액을 알린다.”라고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규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은 예산집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운영 목표를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정부지침 적극 준수·효율적 예산집행 관리·성과주의 예산강화 등에 대한 예산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2018년도 예산운영계획’을 시달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예산운영 방안 중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에 대하여는 반납 예산 활용을 통한 탄력적 예산운영, 신규사업 추진관리 강화 등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특히 탄력적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반납 제도를 적극 활성화 하고자 계획변경 또는 예산절감 등에 의하여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을 수시로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반납된 예산은 예산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예산 이·전용을 통하여 시급한 역점사업 추진이나 재무구조 개선에 재활용 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합리적인 계획수립으로 능률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업추진 완료 후 잔여예산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반납하는 등 예산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 공사의 2018년 사고이월 예산 편성 내역을 점검한 결과 공간정보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무인비행장치(수직이착륙형 고정익) 1세트’를 구입함에 있어 2017. 12. 11. 계약상대자인 [OOOO]시스템 대표 안원태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2. 검수 완료 후 청구에 의거 2017. 12. 27. 계약금액 30,80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음에도 2017년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하지 않고 2018년 예산편성 시 행정착오로 이를 사고이월분으로 판단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더욱이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예산 30,00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등 예산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III 성과감사 결과

#### 1. 총 평

##### ○ 사고이월 예산 편성의 경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무규정」이 정한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2017년 사고이월 예산’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정부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방만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의 예산은 발견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적절하였다.
- 다만, [OOOO]실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4차 용역’과 ‘측량장비 배터리 충전함 구입’ 등 2018년 예산에 미 반영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 사고이월 예산 집행 및 반납이행의 경우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무규정」 제34조(사고이월)에 정한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2017년 사고이월 예산’을 편성하여 「재무규정」 제32조(예산



의 집행)에 따라 201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2017년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 추진현황을 기관(부서)별로 점검한 결과 대체 적으로 집행은 적절하였다.
- 다만, ▲▲▲▲▲부의 ‘무인비행장치(수직이착륙형 고정익) 1세트’를 구입함 에 있어 2017. 12. 27. 계약금액 30,80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대금지 급을 완료하였음에도 2017년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하지 않고 2018년 예산 편성 시 행정착오로 이를 사고이월분으로 판단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 며, 더욱이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예산 30,00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보유 하고 있는 등 앞으로 예산반납 관련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노력 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천원)

구분	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현지 처분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추징	회수	지급	징계	문책 (주의요구)		
건수	3	1					1			(1)		
금액	30,000						30,000					

## 3. 지적사항 요약

**2018 - 31** 2018년 예산편성 부적정(사고이월 예산)

< 요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재무규정」 제28조 및 제34조

- 사고이월 예산의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부의 ‘무인비행장치(수직이착륙형) 1세트 구입’ 및 ‘중요기록물 4차 구축 용역’과 ‘측량장비 배터리 충전함 구입’ 총 648,100,000원의 예산을 2018년 예산 반영 여부 적정을 대조·확인하지 않았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 하고 매년 수립하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예산편성 관련 업무에 철저 를 기하여야함.

< 요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2018년도 예산운영계획

- 공간정보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무인비행장치(수직이착륙형 고정익) 1세트’를 구입함에 있어 2017. 12. 27. 구입대금을 지급하여 불필요한 사고이월 예산을 편성하였음.
- 탄력적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반납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고자 계획변경, 사업종료, 예산절감 등에 의하여 발생한 예산 집행 잔액을 수시로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을 하지 않고 있음.

< 요약 >

「재무규정」 제34조

- 사고이월 예산의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여 재정적·행정적 낭비를 줄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중요기록물 4차 구축 용역’과 ‘측량장비 배터리 충전함 구입’ 총 618,100,000원의 예산을 2018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무규정」 등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고 앞으로 매년 수립하는 예산편성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련자에게는 ‘주의요구’ 함.

## IV 성과감사 처분요구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건,천원)

일련 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2018 - 31	본사 ●●●●부	2018년 예산편성 부적정(사고이월 예산)	통보1			1개월	이▼▼
2018 - 32	본사 ▲▲▲▲부	예산편성 부적정 및 반납제도 이행 소홀		회수1 30,000		1개월	송<<
2018 - 33	본사 ▽▽▽▽부	2018년 부문별 예산편성 부적정 (사고이월 예산 미반영)			주의요구1	20일	이▼▼

##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2018년 부문별 예산편성 부적정 (사고이월 예산 미반영)	주의요구	△△△△△△△△△△	기획경영직3급	오▲▲	2017년 사고이월 예산 '중요기록물 4차 용역' 및 '측량장비 배터리 충전함 구입' 총 예산 618,100,000원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공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 1-2. 시정요구 처분요구 명세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비고
2018 - 32	본사 ▲▲▲▲▲부	예산편성 부적정 및 반납제도 이행 소홀	무인비행장치(수직이착륙형고정익) 구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사고이월 분으로 2018년 예산에 편성된 30,000,000원을 반납하시기 바라며, 직무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V 기타사항

- 성과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부서)에 감사결과를 통지 하고 (처분 요구),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
-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및 홈페이지 공시

붙 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부.

2. 2017년도 부서별 사고이월 예산 명세서 현황 1부. 끝.

일련번호	2018 - 31	감사자	기획경영직 4급 이▼▼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사 ●●●●부	처분요구일자	2018. 7.	회신기일	1개월

♡♡♡♡♡공사 ♡♡감사

## 통 보

제 목 2018년 예산편성 부적정(사고이월 예산)

관 계 기 관 본사 ○○○○실 ●●●●부

내 용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실 ●●●●부(이하 “예산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소관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및 「재무규정」 제28조(예산의 편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sup>1)</sup>’을 준수하고,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재무상태표 및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

「재무규정」 제34조(예산의 이월)에는 “◇장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1)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 알림 (●●●●부-5759, 2017. 9. 14.)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통보 (●●●●부-7959, 2017. 12. 11.)

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담당부서는 2018년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고이월 명세서 세부내역에 대한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이하 “ERP”라 한다)에 등록된 예산요구서와의 대조를 통해 이월예산이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확인한 후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2018년 사고이월 예산 편성내역을 점검한 결과 [별표] ‘2017년분 부서별 사고이월 예산 명세서 현황’과 같이 용역수행기간 연도이월 또는 대금지급 기간 연도이월 등의 다양한 사유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이월예산<sup>2)</sup> 총 33건 중 30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부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수직이착륙형 고정익) 1세트 구입’ 건의 경우 전년도에 동일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사고이월 예산으로 적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예산 30,000천 원을 ERP에 등록하였으며, ②◎◎◎◎실에서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4차 용역’ 및 ‘측량장비 배터리 충전함 구입’ 건에 대한 사고이월 예산 618,100천 원을 ERP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그럼에도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부서별 사고이월 예산 명세서와 ERP 등록 사항에 대한 대조·확인 절차 없이 ERP 등록내역만으로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이사회에 부의하고 2018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2017년 부서별 사고이월 예산 명세서 현황 (▶▶실 등 8개 부서 / 이월예산액: 9,469,268,878원)

이에 따라 ‘최적 자원배분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및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기반 조성’이라는 2018년 예산편성 및 운영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재무건전성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실 ●●●●부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사 ◇장(●●●●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매년 수립하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017년분 부서별 사고이월 예산 명세서 현황

(금액단위: 원)

연번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내용	이월예산 세부내역			비고 (예산 반영여부)
		세항	목		이월예산액	사유	계약(납품)기한	
1	▶▶실	관리비	지급료	지적학 新교육교재 학술연구 및 편찬용역	136,400,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12. 27. ~2018. 12. 26	반영
2	☞☞☞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지적기준점관리시스템 기능개선	196,090,909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8. 25. ~2018. 2. 6	반영
3	☞☞☞실	업무비	재료비	경계점표지(목재) 구입	191,458,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3. 27. ~2018. 4. 2	반영
4	♣♣♣처	측량장비	측량장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성능개선	156,891,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12. 27. ~2018. 6. 26.	반영
5	○○○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시범사업 (빈집정보시스템개발)	505,933,637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9. 13. ~2018. 6. 12.	반영
6	○○○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지원용역	216,910,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4. 20. ~2018. 4.19.	반영
7	○○○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주소정보지원시스템감리용역	20,000,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4.20. ~2018. 4.19.	반영
8	○○○부	업무비	부대사업	도로명 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 지원용역	418,378,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4. 20. ~2018. 4. 19.	반영
9	○○○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국방재산공간정보체계시스템 기능개선	223,636,364	용역입찰 공고 기간연도 이월	(공고기간) 2017. 11. 8. ~2018. 1. 9. (계약기간) 2018. 1. 24. ~2018. 6. 25.	반영
10	○○○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KR 토지보상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416,200,000	용역입찰 공고 기간연도 이월	(공고기간) 2018. 11. 14. ~2017. 1. 19. (계약기간) 2018. 1. 30. ~2018. 8. 29.	반영
11	○○○부	관리비	지급료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용역	46,864,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6. 1. ~2018. 1. 31.	반영
12	○○○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국가지점번호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93,000,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4. 20 ~2018. 4. 19.	반영
13	▲▲▲부	업무비	부대사업	하천대장 개선방안 연구사업	38,171,091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8. 14. ~2018. 6. 13.	반영
14	▲▲▲부	전산장비	전산장비	국가공간정보포털인프라2단계 도입(하드웨어)	857,250,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10. 23. ~2018. 3. 28.	반영
15	▲▲▲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국가공간정보포털 포털감리+인프라2단계 도입(소프트웨어)	1,442,623,635	대금지급 기간 연도이월	2016. 12. 28 ~2017. 12. 28.	반영
16	▲▲▲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재산관리시스템 추가개발용역	28,036,363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10. 13. ~2018. 2. 12.	반영

연번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내용	이월예산 세부내역			비고 (예산 반영여부)
		세항	목		이월예산액	사유	계약(납품)기한	
17	▲▲▲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신기술관련사업 UAV 활용 국토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407,869,560	대금지급 기간 연도이월	2017. 7. 31 ~2017. 12. 31.	반영
18	▲▲▲부	측량장비	측량장비	무인비행기장치 구매	30,000,000	사고이월 불필요	2017. 12. 27. 대금지급완료	반영
19	◆◆◆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공간정보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408,363,637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10. 26. ~2018. 5. 25.	반영
20	◆◆◆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공간정보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외부 감리	37,000,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12.27. ~2018. 5. 25.	반영
21	◆◆◆부	관리비	지급수료	공간정보 품질관리 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27,367,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11.03. ~2018. 2. 2.	반영
22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지적/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1,570,128,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공고기간) 2017. 11. 15. ~2017. 12. 27 (계약기간) 2018. 1. 25. ~2019.1. 24.	반영
23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지적측량정보 스마트 전송 서비스(한도증액)	12,581,182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10. 11. ~2018. 2. 12.	반영
24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지적측량바로처리시스템 기능 개선	88,237,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10. 11. ~2018. 2. 12.	반영
25	■□□	전산장비	전산장비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장비 고도화	599,000,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11. 8. ~2018. 3. 7.	반영
26	■□□	관리비	지급수료	지적정보화 백서 편찬 용역	41,856,5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9. 26. ~2018. 5. 25.	반영
27	●●●	관리비	지급수료	미얀마 토지행정 개선 기본도 제작 및 방법론 도출	108,091,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9. 6. ~2018. 2. 9.	반영
28	●●●	관리비	지급수료	스리랑카 토지정보 현대화 수치지적도 표준모델 구축 및 연속지적도 제작	132,728,000	납품완료 기간 연도이월	2017. 9. 11. ~2018. 1. 10.	반영
29	●●●	관리비	지급수료	탄자니아 토지행정 개선 및 토지등록 효율화 방법론 도출 사업 용역	132,284,000	납품완료 기간 연도이월	2017. 8. 28. ~2017. 12. 27.	반영
30	●●●	업무비	부대사업	세계은행 역량강화 사업	201,820,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7. 10. ~2018. 10. 19.	반영
31	○○○	측량장비	측량장비	중요기록물전산화(DB) 구축 4차용역	479,600,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12. 27. ~2018. 5. 25.	미반영
32	○○○	공기부품	공기부품	측량장비 배터리 충전함 구입	139,500,000	납품완료 기간 연도이월	2017. 11. 28. ~2018. 1. 26.	미반영
33	투투투	관리비	복합생비	동계휴양소 운영비	65,000,000	용역수행 기간 연도이월	2017. 11. 27 ~2018. 2. 23.	반영
계					9,469,268,878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2018년 예산서 부속명세서 및 ●●●●부 사고이월 명세서 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2018 - 32	감사자	기획경영직 3급 송<<<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30,000천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사 ▲▲▲▲▲부	처분요구일자	2018. 7.	회신기일	1개월

## ♡♡♡♡♡♡공사 ♡♡감사

### 시 정 요 구

**제 목** 예산 편성 부적정 및 반납제도 이행 소홀

**관 계 기 관** 본사 ●●●●실 ▲▲▲▲▲부

**내 용**

본사 ●●●●실(구 ■■■■■실) ▲▲▲▲▲부(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는 「직제규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공간컨설팅 추진, 신기술 활용 융복합사업 발굴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사무분장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운영 목표를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정부지침 적극 준수·효율적 예산집행 관리·성과주의 예산 강화 등에 대한 예산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2018년도 예산운영계획’<sup>3)</sup>을 시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운영 방안 중 ‘효율적 예산집행 관리’에 대하여는 반납 예산 활용을 통한 탄력적 예산운영, 신규사업 추진관리 강화 등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특히 탄력적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반납제도를 적극

3) 2018년도 예산운영계획 알림 (●●●●부-1113, 2018. 2. 28.)

활성화 하고자 계획변경 또는 예산절감 등에 의하여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을 수시로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반납된 예산은 예산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예산 이·전용을 통하여 시급한 역점사업 추진이나 재무구조 개선에 재활용 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산집행지침」 3. 예산의 집행 나. 지출 2)에는 “자본적지출 및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예산은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집행의 취소, 사업종료 등에 의한 잔여예산은 예산담당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합리적인 계획수립으로 능률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업추진 완료 후 잔여예산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반납하는 등 예산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표] 2018년 무인비행장치 사고이월 예산편성 현황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내용	수량	예산액 (원)	비고
▲▲▲▲▲부	측량장비	무인비행장치 구매 (수직이착륙형 고정익)	1세트	33,000,000	사고이월 예산 편성 부가가치세 포함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예산관리 / 2018년 예산서 부속명세서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공사의 2018년 사고이월 예산 편성 내역을 점검한 결과 공간정보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무인비행장치(수직이착륙형 고정익) 1세트’를 구입함에 있어 2017. 12. 11. 계약상대자인 ☒☒☒☒시스템 대표 안\*\*과 물품구

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2. 검수 완료 후 청구에 의거 2017. 12. 27. 계약금액 30,800,000원에 대한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음에도 [표] '2018년 무인비행장치 사고이월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2017년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하지 않고 2018년 예산편성 시 행정착오로 이를 사고이월분으로 판단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더욱이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예산 30,00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등 예산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및 예산 반납제도 이행 소홀로 인해 신규 사업 투자, 시급한 역점사업 추진 및 재무구조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실 ▲▲▲▲▲부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사 ◇장(▲▲▲▲▲부장)은 무인비행장치 (수직이착륙형 고정익 1세트) 구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분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된 30,000,000원은 예산총괄부서에 반납하시기 바라며,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8 - 33	감사자	기획경영직 4급 이▼▼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사 ▽▽▽▽부	처분요구일자	2018. 7.	회신기일 20일

## ♡♡♡♡♡공사 ♡♡감사

### 주 의 요 구

제 목 2018년 부문별 예산편성 부적정(사고이월 예산 미반영)

관 계 기 관 본사 ○○○○실 ▽▽▽▽부

내 용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실(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는 「재무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서 사업예산에 대한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무규정」 제34조(예산의 이월)에는 “◇장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 ○○○○실 ●●●●부(이하 “예산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하여 ‘2017년 사고이월 예산 제출’(●●●●부-7295, 2017. 11. 8.)을 통해 부서별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확정분) 세부내역 및 사업관련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또한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월별(연간) 예산집행계획을 전사적자원 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 집행계획 등록 및 제출’(●●●●부-89, 2018. 1. 4.)문서를 시달하였다.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예산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부문별 소요예산 및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하여 반영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표] 2017년분 사고이월 예산 미편성 현황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내용	예산액 (원)	비고
○○○○실	측량장비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4차 용역	479,600,000	ERP 미등록
○○○○실	공기구비품	측량장비 배터리 충전함 구입	138,500,000	ERP 미등록
계			618,100,000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2018년 예산서 부속명세서 및 사고이월 명세서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실의 2018년 예산편성 내역을 점검한 결과 [표] ‘2017년분 사고이월 예산 미편성 현황’과 같이 ‘중요 기록물 전산화 구축 4차 9용역’ 및 ‘측량장비 배터리 충전함 구입’ 등 2건에 대한 사고이월 예산 618,100천 원을 ERP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부서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고이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부문별 소요예산을 추가배정(한도증액) 받아 집행하여야 하므로 부서 예산편성 신뢰도 저하 및 공사 재무적 건전성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실 ▽▽▽▽부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공사 ◇장(▽▽▽▽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0조 제2항 9호에 따라 ‘주의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본사 ○○○○실 ▽▽▽▽부 (현 ♠♠♠♠♠♠처) 기획경영직 3급 오 ♠♠